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6월 23일 20시 44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	3

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

2014.04.17 조회수 80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2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12-06-29
규제시행/폐지일	2012-06-29
규제내용	제27조(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)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09. 12. 31) 1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·약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,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·수질·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.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. 공원·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·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. 제25조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(개정 2004. 12. 24, 2012. 6. 29)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1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3

Yeosu Web Contents

